

대구 신세계 빌리브 라디체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신세계빌리브라디체모델하우스 홈페이지: (<https://emodehouseon.com>) 대표번호: ☎ 1688.3706

대구신세계빌리브라디체 위치: 대구 달서구 본동 760번지 (본리네거리 코너) (대구빌리브라디체할인 16883606)

신세계빌리브라디체모델하우스주소 위치: 대구 달서구 월성동 1874번지 (대구빌리브라디체16883706 신세계빌리브라디체 대구빌리브라디체16883706)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빌리브 라디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사전 예약제 안내
 - 빌리브 라디체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 수가 한정되므로, 지정된 기간 본 아파트 홈페이지(<https://emodehouseon.com>)를 통해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 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예약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동반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 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빌리브 라디체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전화(1670-9799)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 전화 등 청약상담 과정에서 상담고객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여 주민등록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을 위한 자세한 방문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 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12. 03.)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 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1.06.0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이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 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록 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창작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아파트(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아파트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http://radice.villiv.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2) 수도권외의 지역 가) 광역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훈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검수 (당첨자 서류검수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일 정	2021.12.14(화)	2021.12.15(수)	2021.12.16(목)	2021.12.17(금)	2021.12.23(목)	2021.12.24(금) ~ 2021.12.28(화)	2022.01.03(월) ~ 2022.01.05(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 ~ 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74 빌리브 라디체 견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2021.09. 27.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건축과-56992호(2021.12.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76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4층, 지상 49층 4개동 중 아파트 총 520세대 중 일반공급 520세대[특별공급 168세대(일반[기관추천] 29세대, 다자녀가구 49세대, 신혼부부 56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시설생활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개발됨.)
-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 준)	약식표 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 장 등) (m ²)	계약 면적 (m ²)	세대별 대지지분 (m ²)	총공 급 세대 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 수	최하 총 우선 배정 세대 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 천	다 자 녀 가 구	신 혼 부 부	노 부 모 부 양	생 애 최 초	계		
민영주택	20210 00841	01	084.9905A	84A	84.9905	27.4186	112.4091	55.8194	168.2285	13.5865	43	4	4	8	1	3	20	23	1
		02	084.9949B	84B	84.9949	27.8637	112.8586	55.8224	168.6810	13.5872	43	4	4	8	1	3	20	23	1
		03	084.9909C	84C	84.9909	27.9802	112.9711	55.8196	168.7907	13.5865	101	10	10	20	3	7	50	51	3
		04	084.9922D	84D	84.9922	27.5155	112.5077	55.8206	168.3283	13.5867	42	4	4	8	1	3	20	22	1
		05	084.9874E	84E	84.9874	27.5452	112.5326	55.8173	168.3499	13.5860	68	7	6	12	2	4	31	37	2
		06	105.9080A	105A	105.9080	34.1280	140.0360	69.5576	209.5936	16.9303	42	0	4	0	1	0	5	37	1
		07	105.9161B	105B	105.9161	33.7591	139.6752	69.5628	209.2380	16.9316	110	0	11	0	3	0	14	96	3
		08	105.9147C	105C	105.9147	33.6394	139.5541	69.5619	209.1160	16.9314	68	0	6	0	2	0	8	60	2
		09	185.9828A	185A	185.9828	59.7445	245.7273	122.1486	367.8759	29.7310	1	0	0	0	0	0	0	1	0
		10	192.9668A	192A	192.9668	61.9092	254.8760	126.7355	381.6115	30.8475	1	0	0	0	0	0	0	1	0
		11	192.9627B	192B	192.9627	64.2311	257.1938	126.7329	383.9267	30.8468	1	0	0	0	0	0	0	1	0
합 계											520	29	49	56	14	20	168	352	14

※ 평형 환산 방법: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지분을 배분함. 이 또한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 표기	호별	층별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0%	10%	10%	10%	10%	10%	10%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22.05.09	2023.01.09	2023.09.11	2024.05.06	2024.09.09	2025.01.06	입주지정일
84A	101동 1호	5 층	1	246,271,477	283,458,523		529,730,000	52,973,000	52,973,000	52,973,000	52,973,000	52,973,000	52,973,000	52,973,000	52,973,000	105,946,000
		6 층	1	248,860,970	286,439,030		535,30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53,530,000	107,060,000
		7 층	1	251,455,112	289,424,888		540,880,000	54,088,000	54,088,000	54,088,000	54,088,000	54,088,000	54,088,000	54,088,000	54,088,000	108,176,000
		8 층	1	254,049,254	292,410,746		546,460,000	54,646,000	54,646,000	54,646,000	54,646,000	54,646,000	54,646,000	54,646,000	54,646,000	109,292,000
		9 층	1	256,638,747	295,391,253		552,030,000	55,203,000	55,203,000	55,203,000	55,203,000	55,203,000	55,203,000	55,203,000	55,203,000	110,406,000
		10 층~14 층	5	259,232,889	298,377,111		557,610,000	55,761,000	55,761,000	55,761,000	55,761,000	55,761,000	55,761,000	55,761,000	55,761,000	111,522,000
		15 층~19 층	5	261,822,382	301,357,618		563,180,000	56,318,000	56,318,000	56,318,000	56,318,000	56,318,000	56,318,000	56,318,000	56,318,000	112,636,000
		20 층~23 층	4	264,416,524	304,343,476		568,760,000	56,876,000	56,876,000	56,876,000	56,876,000	56,876,000	56,876,000	56,876,000	56,876,000	113,752,000
		25 층~29 층	5	268,303,088	308,816,912		577,120,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57,712,000	115,424,000
		30 층~39 층	10	272,194,301	313,295,699		585,490,000	58,549,000	58,549,000	58,549,000	58,549,000	58,549,000	58,549,000	58,549,000	58,549,000	117,098,000
84B	101동 2호	5 층	1	222,529,034	256,130,966		478,660,000	47,866,000	47,866,000	47,866,000	47,866,000	47,866,000	47,866,000	47,866,000	47,866,000	95,732,000
		6 층	1	224,872,130	258,827,870		483,70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96,740,000
		7 층	1	227,215,226	261,524,774		488,740,000	48,874,000	48,874,000	48,874,000	48,874,000	48,874,000	48,874,000	48,874,000	48,874,000	97,748,000
		8 층	1	229,558,322	264,221,678		493,780,000	49,378,000	49,378,000	49,378,000	49,378,000	49,378,000	49,378,000	49,378,000	49,378,000	98,756,000
		9 층	1	231,901,418	266,918,582		498,820,000	49,882,000	49,882,000	49,882,000	49,882,000	49,882,000	49,882,000	49,882,000	49,882,000	99,764,000
		10 층~14 층	5	234,239,865	269,610,135		503,850,000	50,385,000	50,385,000	50,385,000	50,385,000	50,385,000	50,385,000	50,385,000	50,385,000	100,770,000
		15 층~19 층	5	262,873,056	302,566,944		565,440,000	56,544,000	56,544,000	56,544,000	56,544,000	56,544,000	56,544,000	56,544,000	56,544,000	113,088,000
		20 층~23 층	4	265,476,496	305,563,504		571,040,000	57,104,000	57,104,000	57,104,000	57,104,000	57,104,000	57,104,000	57,104,000	57,104,000	114,208,000
		25 층~29 층	5	269,377,007	310,052,993		579,430,000	57,943,000	57,943,000	57,943,000	57,943,000	57,943,000	57,943,000	57,943,000	57,943,000	115,886,000
		30 층~39 층	10	273,282,167	314,547,833		587,830,000	58,783,000	58,783,000	58,783,000	58,783,000	58,783,000	58,783,000	58,783,000	58,783,000	117,566,000
84C	102동 4호	5 층	3	255,155,716	293,684,284		548,840,000	54,884,000	54,884,000	54,884,000	54,884,000	54,884,000	54,884,000	54,884,000	54,884,000	109,768,000
		6 층	3	257,842,838	296,777,162		554,620,000	55,462,000	55,462,000	55,462,000	55,462,000	55,462,000	55,462,000	55,462,000	55,462,000	110,924,000
		7 층	3	260,529,960	299,870,040		560,40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112,080,000
	103동 4호	8 층	3	263,212,433	302,957,567		566,170,000	56,617,000	56,617,000	56,617,000	56,617,000	56,617,000	56,617,000	56,617,000	56,617,000	113,234,000
		9 층	3	265,899,555	306,050,445		571,950,000	57,195,000	57,195,000	57,195,000	57,195,000	57,195,000	57,195,000	57,195,000	57,195,000	114,390,000
		10 층~14 층	15	268,586,677	309,143,323		577,730,000	57,773,000	57,773,000	57,773,000	57,773,000	57,773,000	57,773,000	57,773,000	57,773,000	115,546,000
		15 층~19 층	15	271,273,799	312,236,201		583,510,000	58,351,000	58,351,000	58,351,000	58,351,000	58,351,000	58,351,000	58,351,000	58,351,000	116,702,000

		20 층~24 층	13	273,956,272	315,323,728		589,280,000	58,928,000	58,928,000	58,928,000	58,928,000	58,928,000	58,928,000	58,928,000	117,856,000
		25 층~29 층	15	277,986,955	319,963,045		597,950,000	59,795,000	59,795,000	59,795,000	59,795,000	59,795,000	59,795,000	59,795,000	119,590,000
		30 층~39 층	20	282,012,989	324,597,011		606,610,000	60,661,000	60,661,000	60,661,000	60,661,000	60,661,000	60,661,000	60,661,000	121,322,000
		40 층~47 층	8	286,043,672	329,236,328		615,280,000	61,528,000	61,528,000	61,528,000	61,528,000	61,528,000	61,528,000	61,528,000	123,056,000
84D	103동 2호	5 층	1	251,566,688	289,553,312		541,120,000	54,112,000	54,112,000	54,112,000	54,112,000	54,112,000	54,112,000	54,112,000	108,224,000
		6 층	1	254,216,618	292,603,382		546,820,000	54,682,000	54,682,000	54,682,000	54,682,000	54,682,000	54,682,000	54,682,000	109,364,000
		7 층	1	256,866,548	295,653,452		552,520,000	55,252,000	55,252,000	55,252,000	55,252,000	55,252,000	55,252,000	55,252,000	110,504,000
		8 층	1	259,511,829	298,698,171		558,210,000	55,821,000	55,821,000	55,821,000	55,821,000	55,821,000	55,821,000	55,821,000	111,642,000
		9 층	1	262,161,759	301,748,241		563,910,000	56,391,000	56,391,000	56,391,000	56,391,000	56,391,000	56,391,000	56,391,000	112,782,000
		10 층~14 층	5	264,807,040	304,792,960		569,60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113,920,000
		15 층~19 층	5	267,456,970	307,843,030		575,300,000	57,530,000	57,530,000	57,530,000	57,530,000	57,530,000	57,530,000	57,530,000	115,060,000
		20 층~23 층	4	270,106,900	310,893,100		581,0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16,200,000
		25 층~29 층	5	274,077,146	315,462,854		589,540,000	58,954,000	58,954,000	58,954,000	58,954,000	58,954,000	58,954,000	58,954,000	117,908,000
		30 층~39 층	10	278,052,041	320,037,959		598,090,000	59,809,000	59,809,000	59,809,000	59,809,000	59,809,000	59,809,000	59,809,000	119,618,000
		40 층~47 층	8	282,022,287	324,607,713		606,630,000	60,663,000	60,663,000	60,663,000	60,663,000	60,663,000	60,663,000	60,663,000	121,326,000
84E	102동 1호 104동 1호	5 층	2	244,077,149	280,932,851		525,010,000	52,501,000	52,501,000	52,501,000	52,501,000	52,501,000	52,501,000	52,501,000	105,002,000
		6 층	2	246,643,397	283,886,603		530,530,000	53,053,000	53,053,000	53,053,000	53,053,000	53,053,000	53,053,000	53,053,000	106,106,000
		7 층	2	249,214,294	286,845,706		536,060,000	53,606,000	53,606,000	53,606,000	53,606,000	53,606,000	53,606,000	53,606,000	107,212,000
		8 층	2	251,785,191	289,804,809		541,590,000	54,159,000	54,159,000	54,159,000	54,159,000	54,159,000	54,159,000	54,159,000	108,318,000
		9 층	2	254,351,439	292,758,561		547,110,000	54,711,000	54,711,000	54,711,000	54,711,000	54,711,000	54,711,000	54,711,000	109,422,000
		10 층~14 층	10	256,922,336	295,717,664		552,640,000	55,264,000	55,264,000	55,264,000	55,264,000	55,264,000	55,264,000	55,264,000	110,528,000
		15 층~19 층	10	259,493,233	298,676,767		558,170,000	55,817,000	55,817,000	55,817,000	55,817,000	55,817,000	55,817,000	55,817,000	111,634,000
		20 층~24 층	9	262,059,481	301,630,519		563,690,000	56,369,000	56,369,000	56,369,000	56,369,000	56,369,000	56,369,000	56,369,000	112,738,000
		25 층~29 층	10	265,913,502	306,066,498		571,980,000	57,198,000	57,198,000	57,198,000	57,198,000	57,198,000	57,198,000	57,198,000	114,396,000
		30 층~39 층	10	269,767,523	310,502,477		580,270,000	58,027,000	58,027,000	58,027,000	58,027,000	58,027,000	58,027,000	58,027,000	116,054,000
		40 층~48 층	9	273,621,544	314,938,456		588,560,000	58,856,000	58,856,000	58,856,000	58,856,000	58,856,000	58,856,000	58,856,000	117,712,000
105A	103동 1호	5 층	1	282,484,956	325,116,948	32,518,096	640,120,000	64,012,000	64,012,000	64,012,000	64,012,000	64,012,000	64,012,000	64,012,000	128,024,000
		6 층	1	285,459,318	328,540,194	32,860,488	646,860,000	64,686,000	64,686,000	64,686,000	64,686,000	64,686,000	64,686,000	64,686,000	129,372,000
		7 층	1	288,433,680	331,963,440	33,202,880	653,600,000	65,360,000	65,360,000	65,360,000	65,360,000	65,360,000	65,360,000	65,360,000	130,720,000
		8 층	1	291,408,042	335,386,686	33,545,272	660,340,000	66,034,000	66,034,000	66,034,000	66,034,000	66,034,000	66,034,000	66,034,000	132,068,000
		9 층	1	294,382,404	338,809,932	33,887,664	667,080,000	66,708,000	66,708,000	66,708,000	66,708,000	66,708,000	66,708,000	66,708,000	133,416,000
		10 층~14 층	5	297,352,353	342,228,099	34,229,548	673,810,000	67,381,000	67,381,000	67,381,000	67,381,000	67,381,000	67,381,000	67,381,000	134,762,000
		15 층~19 층	5	300,326,715	345,651,345	34,571,940	680,550,000	68,055,000	68,055,000	68,055,000	68,055,000	68,055,000	68,055,000	68,055,000	136,110,000
		20 층~23 층	4	303,301,077	349,074,591	34,914,332	687,290,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68,729,000	137,458,000

		25 층~29 층	5	307,762,620	354,209,460	35,427,920	697,40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139,480,000
		30 층~39 층	10	312,219,750	359,339,250	35,941,000	707,500,000	70,750,000	70,750,000	70,750,000	70,750,000	70,750,000	70,750,000	70,750,000	141,500,000
		40 층~47 층	8	316,681,293	364,474,119	36,454,588	717,610,000	71,761,000	71,761,000	71,761,000	71,761,000	71,761,000	71,761,000	71,761,000	143,522,000
105B	102동 3호	5 층	3	281,756,811	324,278,913	32,434,276	638,470,000	63,847,000	63,847,000	63,847,000	63,847,000	63,847,000	63,847,000	63,847,000	127,694,000
		6 층	3	284,722,347	327,692,001	32,775,652	645,190,000	64,519,000	64,519,000	64,519,000	64,519,000	64,519,000	64,519,000	64,519,000	129,038,000
		7 층	3	287,692,296	331,110,168	33,117,536	651,920,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130,384,000
		8 층	3	290,657,832	334,523,256	33,458,912	658,640,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131,728,000
	103동 3호	9 층	3	293,623,368	337,936,344	33,800,288	665,360,000	66,536,000	66,536,000	66,536,000	66,536,000	66,536,000	66,536,000	66,536,000	133,072,000
		10 층~14 층	15	296,588,904	341,349,432	34,141,664	672,080,000	67,208,000	67,208,000	67,208,000	67,208,000	67,208,000	67,208,000	67,208,000	134,416,000
		15 층~19 층	15	299,554,440	344,762,520	34,483,040	678,80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135,760,000
	104동 3호	20 층~24 층	13	302,519,976	348,175,608	34,824,416	685,520,000	68,552,000	68,552,000	68,552,000	68,552,000	68,552,000	68,552,000	68,552,000	137,104,000
		25 층~29 층	15	306,968,280	353,295,240	35,336,480	695,60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139,120,000
		30 층~39 층	20	311,416,584	358,414,872	35,848,544	705,680,000	70,568,000	70,568,000	70,568,000	70,568,000	70,568,000	70,568,000	70,568,000	141,136,000
		40 층~48 층	17	315,864,888	363,534,504	36,360,608	715,760,000	71,576,000	71,576,000	71,576,000	71,576,000	71,576,000	71,576,000	71,576,000	143,152,000
105C	102동 2호	5 층	2	287,317,191	330,678,453	33,074,356	651,070,000	65,107,000	65,107,000	65,107,000	65,107,000	65,107,000	65,107,000	65,107,000	130,214,000
		6 층	2	290,344,509	334,162,647	33,422,844	657,930,000	65,793,000	65,793,000	65,793,000	65,793,000	65,793,000	65,793,000	65,793,000	131,586,000
		7 층	2	293,367,414	337,641,762	33,770,824	664,780,000	66,478,000	66,478,000	66,478,000	66,478,000	66,478,000	66,478,000	66,478,000	132,956,000
		8 층	2	296,390,319	341,120,877	34,118,804	671,630,000	67,163,000	67,163,000	67,163,000	67,163,000	67,163,000	67,163,000	67,163,000	134,326,000
		9 층	2	299,417,637	344,605,071	34,467,292	678,490,000	67,849,000	67,849,000	67,849,000	67,849,000	67,849,000	67,849,000	67,849,000	135,698,000
	104동 2호	10 층~14 층	10	302,440,542	348,084,186	34,815,272	685,340,000	68,534,000	68,534,000	68,534,000	68,534,000	68,534,000	68,534,000	68,534,000	137,068,000
		15 층~19 층	10	305,463,447	351,563,301	35,163,252	692,190,000	69,219,000	69,219,000	69,219,000	69,219,000	69,219,000	69,219,000	69,219,000	138,438,000
		20 층~24 층	9	308,490,765	355,047,495	35,511,740	699,050,000	69,905,000	69,905,000	69,905,000	69,905,000	69,905,000	69,905,000	69,905,000	139,810,000
		25 층~29 층	10	313,027,329	360,268,707	36,033,964	709,330,000	70,933,000	70,933,000	70,933,000	70,933,000	70,933,000	70,933,000	70,933,000	141,866,000
		30 층~39 층	10	317,563,893	365,489,919	36,556,188	719,610,000	71,961,000	71,961,000	71,961,000	71,961,000	71,961,000	71,961,000	71,961,000	143,922,000
		40 층~48 층	9	322,100,457	370,711,131	37,078,412	729,890,000	72,989,000	72,989,000	72,989,000	72,989,000	72,989,000	72,989,000	72,989,000	145,978,000
185A	103동 1호	48 층	1	613,932,147	706,585,401	70,672,452	1,391,190,000	139,119,000	139,119,000	139,119,000	139,119,000	139,119,000	139,119,000	139,119,000	278,238,000
192A	102동 1호	49 층	1	643,234,467	740,309,961	74,045,572	1,457,590,000	145,759,000	145,759,000	145,759,000	145,759,000	145,759,000	145,759,000	145,759,000	291,518,000
192B	103동 2호	48 층	1	649,068,453	747,024,399	74,717,148	1,470,810,000	147,081,000	147,081,000	147,081,000	147,081,000	147,081,000	147,081,000	147,081,000	294,162,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84.9905A	084.9949B	084.9909C	084.9922D	084.9874E	105.9080A	105.9161B	105.9147C	185.9828A	192.9668A	192.9627B
약식표기 주택형	84A	84B	84C	84D	84E	105A	105B	105C	185A	192A	192B

■ 청약 및 계약유의사항

- 본 건물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공동주택 상품임.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 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된 가격임
- 오피스텔 및 균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버림에 따른 오차는 임의의 세대에 반영하였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오피스텔, 균린생활시설 각각의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각 세대별 및 호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균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지 않은 공유지분 형태로 계획되어 있음.
- 본 상품은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공동주택 밸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상기 세대 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경계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균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교통영향평가 등) 사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균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은 본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당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세대 시공 및 품질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 예정이며, 견본세대는 내부 마감재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84E	105A	105B	105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2	1	2	0	0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2	1	1	0	0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2	1	1	0	0	4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0	1	0	0	5
	장애인	1	1	2	1	2	0	0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4	10	4	6	4	11	6	49
신혼부부 특별공급	8	8	20	8	12	0	0	0	5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3	1	2	1	3	2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7	3	4	0	0	0	20
합 계	20	20	50	20	31	5	14	8	16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 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구분	해당 기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5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 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 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 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 근로자	<p>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p>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신규사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 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견본주택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이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 내역 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 분에 한 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부터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 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등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에 따름.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2021.06.0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총 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총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총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총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경상북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총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및 추첨제(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총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30%), 추첨제(7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총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 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 바람.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0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0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01일에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

	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5.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정학목	가정상환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3명	20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훈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훈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2.14(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1.12.15(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경상북도거주자)	2021.12.16(목) 09:00~17:30		
	2순위		2021.12.17(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창구 접수시간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 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 수	추가 (해당자)				
공 통 서 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자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지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직계존· 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기 관 추 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신청자 구비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신청자 구비
다 자녀 특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 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세대 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별 공 급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 속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신 혼 부 부 특 별 공 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신청자 구비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	
노 부 모 부 양 특 별 공 급	<input type="radio"/>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신청자 구비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 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 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 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 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생 애 최 초	<input type="radio"/>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신청자 구비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특별 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청자 구비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 자 대 리 인 신 청 시 추 가 사 항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대리 신청자 구비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경우 접수를 받지 않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다음날부터일반공급청약신청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 접수 가능시간 09:00 ~ 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d><td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tr> </table>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p>●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이상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준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거주(2021.06.03.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종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종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12.23.(목)•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01.03.(월)~2022.01.05.(수)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빌리브 라디체 모델하우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74)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본 상품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9-42조,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에 의거 계약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radice.villiv.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23 (목) ~ 2022.01.01 (토)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23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및 제출 일정은 본 아파트 홈페이지(<http://radice.villiv.co.kr>)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임.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추후 안내 예정인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자격검증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자격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 확인절차로 인해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견본주택 방문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본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통해 진행할 계획임.
-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 1인만 입장률 원칙으로 함. (동반자 입장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빌리브 라디체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74)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서약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가점제 당첨,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특별 공급	O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증명서류	-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포함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O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일정기간 거주 증명)가 필요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하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3335836	아시아신탁(주)(달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흥길동: 101101흥길동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단,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계약금 납부: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시 예시: [예: 101동 101호 흥길동 → '101101흥길동']
- 분양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최소 1개월의 환불기간이 소요됨. 해당 기간 동안의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습니다
-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한 전 주택형 대출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납부하신 중도금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및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05.09	입주지정기간	
84.9905A	30,770,000	3,077,000	3,077,000	24,616,000
84.9949B	28,140,000	2,814,000	2,814,000	22,512,000
84.9909C	36,570,000	3,657,000	3,657,000	29,256,000
84.9922D	26,200,000	2,620,000	2,620,000	20,960,000
84.9874E	27,530,000	2,753,000	2,753,000	22,024,000
105.9080A	39,230,000	3,923,000	3,923,000	31,384,000
105.9161B	31,000,000	3,100,000	3,100,000	24,800,000
105.9147C	30,640,000	3,064,000	3,064,000	24,512,000
185.9828A	57,230,000	5,723,000	5,723,000	45,784,000
192.9668A	58,670,000	5,867,000	5,867,000	46,936,000
192.9627B	60,780,000	6,078,000	6,078,000	48,624,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3335836	아시아신탁(주)(달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흥길동: 101101흥길동

- 상기 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동일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시 예시 : [예 : 101동 101호 흥길동 → '101101흥길동']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색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마감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VAT포함]

주택형(타입)	구분	설치위치	설치대수 (실내기)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05.09	입주지정기간
84A/B/C/D/E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4 대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105A/B/C	시스템에어컨	거실(2)+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6 대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185A/192A/192B	시스템에어컨	거실(2)+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6 대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선택품목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 및 냉매배관 및 콘센트만 설치되며, 실외기실에 냉매배관만 시공됨(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상기 서비스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다용도실)에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선택품목의 품목에 따라 일반세대(옵션 미선택)와 마감방법 및 마감의 재료분리대등 마감시공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에 옵션으로 인한 마감방법은 일반세대(옵션 미선택)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2.05.09	입주시		
84A/B/C/D/E	주방&욕실 고급화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렌지후드, 주방가전, 욕실 마감, 도기, 수전	103,300,000	10,330,000	10,330,000	82,640,000	이태리 수입 주방가구(BINOVA), 주방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고급형 후드, 인덕션 3 구(삼성), 전기오븐(삼성), 식기세척기(삼성), TBI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욕실 벽 유럽산 타일 욕실바닥수입타일, 수입 수전, 세면대, 도기(비데일체형)
	마감&수납 고급화	바닥 마감(원목마루+타일), 아트월(거실-주방), 복도 벽 판넬 디자인 우물천장, 조명/배선기구 특화, 현관 중문, 발코니 바닥 타일,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안방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자녀방 불박이장, 안방 목장호 모티스락	34,700,000	3,470,000	3,470,000	27,760,000	거실 및 주방복도 타일바닥 침실바닥 원목마루, 거실 및 주방 아트월 유럽산 타일, 복도 벽 판넬 디자인 우물천장+조명 특화(거실+주방), 안방 디밍 조명+유럽형 배선기구, 현관 중문, 발코니 고급 우드타일,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조명형+후면 판넬), 안방 불박이장, 빌트인 스타일러(LG), 자녀방 불박이장
105A/B/C	주방&욕실 고급화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렌지후드, 주방가전, 욕실 마감, 도기, 수전	116,200,000	11,620,000	11,620,000	92,960,000	이태리 수입 주방가구(BINOVA), 주방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고급형 후드, 인덕션 3 구(삼성 비스포크), 전기오븐(삼성), 식기세척기(삼성), TBI 냉장고(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욕실 벽 유럽산 타일 욕실바닥 수입 타일, 부부욕실 거울 조명 특화, 수입 수전, 세면대, 도기(비데일체형)
	마감&수납 고급화	바닥 마감(원목마루+타일), 아트월(거실-주방), 복도 벽 판넬, 복도장 및 세탁실 선반, 디자인 우물천장, 조명/배선기구 특화, 현관 중문, 발코니 바닥 타일,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안방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자녀방 불박이장, 안방 목장호 모티스락	38,800,000	3,880,000	3,880,000	31,040,000	거실 및 침실 바닥 원목마루, 거실 및 주방 아트월 유럽산타일, 복도 벽 판넬 디자인 우물천장+조명 특화(거실+주방), 안방 디밍 조명+유럽형 배선기구, 현관 중문, 발코니 고급 우드타일,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조명형+후면 판넬), 안방 불박이장, 빌트인 스타일러(LG), 자녀방 불박이장, 복도장 및 세탁실 선반(105B 탑입에 한함)
185A 192A 192B	주방&욕실 고급화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렌지후드, 주방가전, 욕실 마감, 도기, 수전	195,900,000	19,590,000	19,590,000	156,720,000	이태리 수입 주방가구(BINOVA), 주방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고급형 후드, 인덕션 3 구(삼성 비스포크), 전기오븐(삼성), 식기세척기(삼성), TBI 냉장고(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욕실 벽 유럽산 타일 욕실바닥 수입 타일, 부부욕실 거울 조명 특화, 수입 수전, 세면대, 도기(비데일체형)
	마감&수납 고급화	바닥 마감(원목마루+타일), 아트월(거실-주방), 복도 벽 판넬, 세탁실 선반 일부, 디자인 우물천장, 조명/배선기구 특화, 현관 중문, 발코니 바닥 타일,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안방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자녀방 불박이장, 안방 목장호 모티스락	57,200,000	5,720,000	5,720,000	45,760,000	거실 및 침실 바닥 원목마루, 거실 및 주방 아트월 유럽산 타일, 디자인 우물천장+조명특화(거실+주방), 안방 디밍 조명+유럽형 배선기구, 현관 중문, 발코니 고급 우드타일,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조명형+후면 판넬), 안방 불박이장, 빌트인 스타일러(LG), 자녀방 불박이장,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 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대금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액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발주 해야 하므로 계약금 납부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기 바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선택 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선택 품목 계약은 공동주택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 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함.
 - 추가선택 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 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고, 아파트 공급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 품목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됨.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 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3335836	아시아신탁(주)(달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동일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ex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 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동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창호	목문틀, 목문짝, 목문틀 상부마감판, 문선,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디지털도어록(현관)	목재도어(공문틀포함)의 가틀, 발코니 내·외부 PL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일반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재	강마루바닥재 및 PVC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디딤판 및 걸레받이, 시멘트몰탈 포함, 타일) 발코니/세탁실(타일, 재료분리대, 배수커버,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 방수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시트지 등), 발코니·세탁실·대피소 벽 도장,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에 면한 경량칸막이 등	콘크리트 벽체 또는 면처리, 석고보드(일부),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천정	천정지(초배포함), 물딩, 우물천정 등 인테리어 마감일체 발코니·세탁실·천정 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콘크리트 면처리, 커튼박스 소방관련시설
전기, 통신설비	부착/매입/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매입등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화재감지기, 배선기구류 (스위치 및 콘센트, 전화, TV수구)
욕실	천정재(천정틀, 배기휀 포함),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수전류 등), 욕실인테리어(재료분리대, 욕실푼, 샤워부스, 욕실장, 액세서리, 선반, 스위치, 콘센트, 바닥배수커버, 코킹)	벽체, 방수, 설비배관, 전기 배관/배선, 욕실(배기후렉시블)
주방	주방가구 및 가구일체(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렌지후드, 주방TV 등 가전일체, 전기오븐, 쿡탑, 수전류, 자동식소화장치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	가구류 일체(신발장, 화장대, 불박이장, 드레스룸장 등), 수전류(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등)	세탁실 및 발코니 설비배관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VAT포함]

구 분	84A	84B	84C	84D	84E	105A	105B	105C	185A	192A	192B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24,897,400	25,765,300	25,082,200	25,495,800	25,363,800	29,575,700	29,629,600	29,683,500	42,484,200	47,485,900	47,655,3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발코니확장 옵션의 경우 확장에 따른 마감(바닥, 벽체, 가구 등)이 포함되므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확장 선택불가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

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레인지 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레인지 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쿡탑이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통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함.

VII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민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 및 층별로 조망 및 일조량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및 분양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 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경기구), 외부계단, 단지 레벨차에 따른 벽 등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전형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확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이를 정해진 용도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 개조 증개축하는 행위는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하층은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내진 능력은 수정메르 칼리 진도 등급 VII 0.243g임.

■ 견본주택 관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풀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옥 창호류, 가구류, 유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의 특점,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경쟁입찰 등에 따라 동일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됨.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최종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및 신고포함)에 준함.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및 탈취시설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호실) 분전반은 타입, 형태 및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디퓨저, 드레인, 선풍통 등의 타입, 형태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 전용 제품으로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어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분양홍보물 관련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10월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자자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사전확인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대중교통 관련 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모든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것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홍보를 위한 평면에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가구와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외부조망사진 및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단지 외부여건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건축허가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사항, 각종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비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도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구역 내 기부 채납하는 공공시설(주차장)은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관련법규에 의거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은 동측으로 인접건축물과 인접하며, 서측으로 40m도로, 남측으로 10m도로 및 우리병원, 북측으로 41m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대지 북측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음.
- 본 건물에 인접 배치된 건물로 인하여 저층세대 일부에 채광 및 조망,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시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인근 대지 남측의 우리병원과 공사중인 달서코아루 더리브(최고 45층)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및 기타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도로(차도, 인도 등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인접한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진출입 시 혼잡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함.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맨홀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수 있음.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배치도의 대지(도로)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의 유치원생은 13권역 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초등학생들은 덕인초등학교 시설 부족으로 적정배치가 불가하여 교실 증축 및 식당확장 등 학교시설이 확보되어야 배치가 가능함. (대구덕인초등학교 시설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주변 대구덕인초등학교 배치가 필요한 타 사업장,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교실 20실(특별교실 3실 포함) 및 식당 확장 등 학교시설 확보를 위한 무상공급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중학생은 8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분양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본 건물은 복합 건축물로서 단지 내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층별계획은 아래와 같음.
 - 지하 4~지하 1층: 아파트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동별출입구(아파트, 오피스텔)
 -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 지상 3층: 주차장 (오피스텔), 동별출입구(오피스텔)
 - 지상 4층: 주민공동시설 (아파트, 오피스텔용)
 - 지상 5층: 주거 및 업무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또한, 준공 시까지 상가동의 입점 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은 지상1층과 지상4층에 아파트세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가 위치함.
- 대지북측도로(41M)변 공개공지 2개소 설치에 따라 공공에 24시간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 입주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상시 외부인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지 남측 10M도로에서 북측 버스정류소(예정)까지 사업부지를 종단하는 보행자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공에 24시간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 입주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상시 외부인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은 동일층의 아파트(2세대 또는 4세대)이 공동공간을 공유하도록 공간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관문 전면 복도의 너비, 형태 등은 설비공간 설치에 따라 단위세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등), 외부조명시설, 통합관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옥탑층 및 건물 외벽에 의장용 구조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피뢰침, 태양광,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102동 및 104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파에 대한 영향 및 통신장애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옥탑 인명구조 활동공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인접 동에서 볼 때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노출되는 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기계환기시스템, 보일러 연도, 욕실배기, 주방배기 등을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이삿짐의 이동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승강기 툴의 저층부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는 근린생활시설용 공용홀마다 각각 1대씩 (총3대) 장애인 및 화물겸용승강기가 설치됨.
- 승강기와 인접한 세대는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승강기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건물은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대현관 방화문 여닫음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 이러한 현상 완화를 위해 추가 시설(도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24층(104동 제외)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시(화재 등) 피난계단을 이용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음. 이때 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경유하는 동선으로 설치됨.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차장은 지하4층~지하1층(4개층)에 위치하고, 주거용(아파트) 차량출입구는 북측 40m 도로변에 진출입구가 설치됨. 비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차량)은 남측 10m도로변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주거와 비주거로 차량출입구가 분리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 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용도별로 분리배치 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람.
 - 아파트: 지하1~지하4층
 - 오피스텔: 지상2(일부)~지상3층
 -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일부)또한 지상1층 일부 주차구획은 서비스주차(근린생활시설 하역, 쓰레기 수거 등)으로 활용될 예정임.
- 허가도서 기준으로 아파트용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은 지하1~지하2층에 각 3기씩 (총 6기)가 위치하며, 충전시설은 급속1기, 완속5기가 설치됨.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용 지하주차장 진입 및 진행 유효높이 2.7m(지하1층 해당)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이 가능함. 다만,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량 등의 진입은 불가함. (지하2층~지하4층 주행유효높이: 2.3m)
-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 상부는 각종 공급시설(배선,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 및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타 시설과 구분되어 있으며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인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 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복리시설에 따른 프라이버시/소음 등)
- 단지 및 아파트 내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옹벽, 석축, 계단,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출입구, 통합관리실, 주민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진입층 및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주차출입구, 저층부 근린생활시설등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공동주택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변 시설의 경관조명, 공용시설 조명,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조명 및 야간 시 차량 진출입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흠크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름용 DA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의 단차가 발생하는 인접세대는 상부층 및 지붕의 우수 및 오수 배관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심상업지구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동간 인동거리 법규를 적용 받지 않는 시설로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주보는 세대의 내부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은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잔디로 마감될 예정임으로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지상4층(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라이브러리,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관리사무소)에 위치하며(어린이집은 지상 1층에 설치됨),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35조에 의거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대구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임.
- 지상 1층의 유아놀이터는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는 관계로 높이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이로 인해 부대복리시설 면적은 시설 별 전용면적비로 배분하여 산정하였음.
-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세부시설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입주민이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오음, 빛 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쓰레기보관소와 재활용품 보관소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냄새 및 기타 환경권침해가 발생하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2동 인근: 쓰레기집하장(아파트 및 오피스텔겸용), 재활용품보관소 (아파트 및 오피스텔 겸용), 쓰레기집하장(근린생활시설용), 재활용품보관소(근린생활시설용)
 - 104동 인근: 쓰레기집하장(아파트), 재활용품보관소(아파트), 쓰레기집하장(근린생활시설용), 재활용품보관소(근린생활시설용)
- 지하1층 및 지상1층 환기구(D/A) 설치가 아래와 같이 되므로 이에 따라 냄새, 바람의 발생으로 보행 시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1층 주차진입램프, 공개공지의 조경 및 가로수목, 보안등, 한전 개폐기 등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의 가시성 확보에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1층: 주차출입구 인근
- 지상1층: 101동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 102동 쓰레기집하장 인근, 어린이집 인근 유아놀이터, 104동 인근
또한 지상1층 주차진입램프, 공개공지의 조경 및 가로수목, 보안등, 한전 개폐기 등에 의하여 상가의 가시성 확보에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경비실은 지하1층 주거용(아파트) 차량 진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차단기가 진출입구인근에 설치될 예정임.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예정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람.
- 본 사업지 내 설치되는 CCTV모니터는 1년간 품질을 보증함.
- 공용부 등에 동파우려가 있는 배관에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본 건축물의 무인택배시스템은 지상1층 각 동별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 및 ARS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본 아파트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승강기 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로 차량이 출입할 수는 있으며 또한 쓰레기 수거차량,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 동선을 이용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를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태양광집열판이 아파트(103동 및 104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눈부심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 유지, 보수, 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은 지하1층~지상2층(3개층)에 위치하며, 대지의 경사에 따라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이 도로에 노출되는 등 근린생활시설 총수에 따른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 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매장구획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은 지상2층~지상3층에 총 3개소 설치되며, 실외기실과 인접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아파트 및 오피스텔용) 이용시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방급배기시설이 지상2층~지상3층에 총 2개소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 및 부대시설 이용시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시까지 근린생활시설동의 입점 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의 주방배기로 인하여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배기)시스템은 분양자 공사 분이며 그로 인해 인접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의 소음, 냄새, 분진 발생에 따른 설치자의 책임이 있으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입장 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옥상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 시공 시 설치 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조경공간, 비상차량동선 및 도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의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경시설 및 조경식재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규격이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미술장식품은 1층 조경공간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미술장식품의 작품 및 작가, 설치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위치 및 형상은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조경공간 인근 소방차 부서공간을 위한 오프닝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하부 (주차장 및 지상1층)의 소음, 분진, 매연 등이 올라올 수 있어 이에 따른 불쾌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의 가구배치 및 마감 사양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세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에 설치되는 가전, 가구 및 마감재 등은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 변경 또는 제외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감액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음.
-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복도/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500mm이며 천장고 및 우물천장의 깊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일부 구간에 픽쳐레일 몰딩이 설치되며, 픽쳐레일의 형태 및 색상,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고 액자걸이 및 와이어는 제공되지 않음.
- 각 실의 크기는 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보일러를 이용한 개별난방 방식으로 난방수와 급탕수를 공급함.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자재(천연석재, 대리석접합타일, 원목마루, 온돌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 질감의 공급이 어려우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갈라짐, 옹이, 흠집, 결, 무늬, 이색, 철분에 의한 변색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마루 바닥재(원목마루, 강마루 등)는 자재의 특성상 스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에 취약하며,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완강기가 설치되는 세대(호실)의 경우 인접한 가구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공사시 가구의 형태, 방향, 규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외창 및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창호의 제조사, 재료,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사양, 설치 위치 및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장재의 종류 및 설치 디테일에 따라 창호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에 의해 층별, 실별, 위치별 창호 사양(유리두께, 창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의 높이 및 디자인,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5~16층 세대에는 소방관진입창호가 설치(붉은색 삼각형 스티커가 부착되며, 이에 따른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있을 수 있음)되며, 일부 개폐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거실에 적용되는 입면분할 창호는 구조상 난간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국기봉이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세대 현관문 및 피난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재질 및 두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등의 디테일은 본 공사 시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 훌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도어에 손끼임방지철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험의 종류 및 형태, 색상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물구배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문턱의 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관련이 없음. 욕실문 개폐 시 욕실화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기기 및 액세서리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금속 거울 및 가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의 형태, 색상,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 공사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다용도실 또는 창고,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있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가(5F~10F)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이 되며,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보일러 설치공간에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천장은 별도의 천장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환기장비 및 덕트, 가스, 에어컨,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어 미관저하를 초래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그렇지 않은 발코니가 있으며, 배관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의 사양,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에서 제외되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露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을 수 있어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露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 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설치를 위한 일부 경량벽체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삭제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일부 벽체가 경량벽체로 설치되며, 중량물 설치나 옮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를 위해 골조 일부가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에는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개별적 가스 사용자는 관할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사용자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함.
- 주방가구의 싱크, 수전 및 각종 빌트인 가전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공간 및 후드용 덕트가 지나가는 일부 공간은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가구의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 및 액세서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 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 시스템 선반 및 벽·바닥의 마감 등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 가구에 매립된 조명의 경우 On/Off 방식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센서 혹은 스위치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된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호실) 내 화재 시 연기배출을 위한 배연창 (오피스텔만 해당: 실당 1개소)은 관련 법령 및 심의사항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창호 기능이 제한되거나 개폐방향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배연창은 평상 시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으며, 수동으로 개방 시 방재실에서 오작동으로 인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는 천장 내부에 상부 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펜트세대는 아파트 각 최상층(101, 104동 제외)에 계획되어 있으며, 테라스 공간 경계부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됩니다. 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펜트세대는 대지지분, 전용, 공용면적 등 장부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야외 테라스 및 옥외공간이 제공되며, 각 세대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펜트세대 전면에 설치하는 테라스 및 옥외공간은 위치 및 배치여건에 따라 동일 타입임에도 제공되는 크기 및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 및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펜트세대 옥외공간은 기본 마감으로 타일이 제공되며, 추후 이용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등은 각 전용 세대가 부담하여야 함.
- 펜트세대 옥외공간은 기본 마감으로 타일이 제공되고 우수 및 오수를 위한 배관 및 하부세대 통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이용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등은 각 전용 세대가 부담하여야 함.

[하자보수]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아파트의 특성 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마감재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마감자재(가구, 석재, 인조석, 목재, 타일, 도배지, 걸레받이, 몰딩 등)는 각 자재의 특성상 색상, 무늬, 재질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견본주택과 다르게 보일 수 있음. 자재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따름.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등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벽체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각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옵션형 Type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기본형 선택 시 마감재, 가구, 우물천장, 위생기기,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개수 및 설치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139.75m^2) 등

-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304.89m^2), 사우나(415.20m^2), 골프연습장(278.63m^2), 라이브러리(242.69m^2), 경로당(128.90m^2), 게스트하우스(71.66m^2), 라운지(301.58m^2), 어린이집(377.74m^2) 등]

※ 상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은 시설별 면적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시설별 전용면적비율로 배분됩니다. 또한, 시공상 여건에 따라 일부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물건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17300호	₩ 262,400,816,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주상복합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정보 진행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주택 또는 단지 내 상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p>○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p> <p>□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체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 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체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종도금을 되돌려 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p>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p>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p>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p>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p> <p>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p> <p>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p> <p>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p> <p>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p> <p>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p> <p>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p> <p>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흄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 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p>

	<p>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p>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p> <p>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p>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 관리형토지신탁관련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피엠밸류,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주) 및 시공사 신세계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피엠밸류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피엠밸류이고,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분양대금수납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신세계건설(주)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아시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피엠밸류와 수탁자 아시아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피엠밸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아시아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아시아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아시아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피엠밸류에게 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서울-주대2008-0015
● 사업방식: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건축과-56992호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VAT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구조	소방	통신
회사명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주)구조연합	서한컨설팅(주)	신일이앤씨(주)
감리금액	2,904,451,000	630,360,000	99,000,000	689,700,000	181,5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 수탁사)	사업주체(시행 위탁사)	시공사
상호	아시아신탁(주)	(주)피엠밸류	신세계건설(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01, 에이동 501호	서울시 종로구 소월로 10, 21층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1-7146726	110111-0759493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74번지

■ 사업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760번지

■ 홈페이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규정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